

청탁금지법 상담기록부

결 재	인 인	국 무 장 관	국 무 장 관	국 무 장 관
국무장관 <i>이영호</i>				

상담일시	2019. 10.	상담장소	감사담당관실
신청자	人 人 人	상담자	청탁방지담당관
상담유형	부정청탁 / 금품수수 / 외부강의 / 기타		
상담내용	(질의) 대학원으로부터 논문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요청이 있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(답변) ○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에 의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, -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 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· (유사사례)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·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음. ○ 다만,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함으로 인해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수수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나, - 그 권원이 정당(법령·기준상 허용 여부, 직무의 특성, 전문성 등)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.		
비 고			